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 포함 명시 >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504호)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 포함 명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지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2. 2.
3. 회 부 일 : 2026.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착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악이 기존의 성착취물과 다르지 않음.

현행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도로 발달한 생성형 AI 기술 등으로 제작된 디지털 위조물이 현행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나 입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입·소지·시청하는 행위까지 실제 성착

취물과 동일한 수준의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 포함 명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조작하여 만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u>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u>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u>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영상물등 외에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조작하여 만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하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화상·영상의 제작이 손쉬워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여 화상이나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실제 피해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합성·조작된 화상·영상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영상물등 외에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조작하여 만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합성·조작된 화상·영상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조작하여 만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하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 함)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적 이미지 표현물의 의미가 모호하고,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의 합성·조작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봄.

다음, 현행법 제2조제5호1)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화상·영상물 등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물도 포함되며,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조작하여 만든 성적 영상물 등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

그런데, 개정안은 제11조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가 축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아동·청소년성

-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착취물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 포함되어 처벌이 가능하고,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규정 개정 없이 제11조
처벌규정 내에서 정의할 경우 법체계 정합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성
적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측면에서 신중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현행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합성·조작된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고, 개정안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판례

- 부산지방법원(2023.9.22.선고, 2023고합387)은 이미지 생성 시를 이용해 ‘10살’, ‘생식기 노출’ 등의 명령어를 입력하여 아동의 나체·성행위 이미지를 제작한 행위 등에 대해 유죄판결 선고를 한 바 있음²⁾.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2.10.20.선고, 2022고합38)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얼굴과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동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동법 제11조의 “제작”의 의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직접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사진을 이용하여 합성물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³⁾.
- 수원지방법원(2025.7.17.선고, 2025고합304)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몸과 합성한 사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나 불상의 여성의 몸이 그 형태나 발육상태에 비추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음⁴⁾.
- 서울고등법원(2024.11.1.선고, 2024노1823)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⁵⁾.
- 대법원(2025.8.14.선고, 2024도17801)은 “합성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배경으로 그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2)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합387 판결

“.....③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방법이나 형태, 표현하는 매체나 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 점, ④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을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Stable Diffusion Web U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생성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고합38 판결

".....이 사건 합성물은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하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동·청소년의 얼굴 외에 다른 신체 부위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청법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과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합성한 이 사건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 (중략) 아동·청소년을 직접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만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사진을 이용하여 합성물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수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304 판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물리적으로 사용하여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략) 이 사건 각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 사진 자체는 모두 활동 중인 여성 걸그룹 멤버들로서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진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영상물의 출처,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으로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음란물을 규제한 입법 경과 및 입법 취지, 그 이후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비록 사람의 얼굴이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성물과 같은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배포)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성물과 같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사진의 얼굴 부분에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하였고,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